인문한국플러스(HK+)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개정(안)

개정일 : 2026.2.2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「학술진흥법」과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의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"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"(이하 "HK+사업"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가이드라인은 HK+사업에 2017년부터 선정되는 대학 및 연구소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'HK+' 는 '인문한국플러스' 의 영어 표현인 Humanities Korea plus의 머리글자를 딴 약칭을 말한다.
2. '아젠다' 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각 연구소 연구과제수행계획서(이하 연구계획서)의 연구주제를 말한다.
3. '연구계획서' 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청서를 말한다.
4. '연구단' 은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연합하여 참여한 형태를 말한다.
5. 'HK+연구소(원)' 는 HK+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소(원)를 말한다.(이하 "HK+연구소"라 한다.)

제4조(HK+연구소의 유형) ① HK+연구소는 HK사업 및 HK+사업 미수행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HK+ 1유형과 HK사업 완료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HK+ 2유형으로 구분한다.

② HK+연구소의 연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.

1. 인문기초학문 : 기초인문학 분야 인프라 구축 및 우수 학술성과 창출
2. 해외지역 :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및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
3. 소외보호 및 창의도전 : 학문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분야(소외보호) 및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분야(창의도전)
4. 국가전략 및 융복합 : 사회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방안 제시(국가전략) 및 타학문과의 통섭적 연구 강조(융복합)

제5조(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) 2017년부터 HK+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, HK+연구소 및 참여인력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2장 인문한국플러스관리위원회

제6조(설치)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+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·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선정평가, 수시점검, 연차점검, 단계평가, 총괄평가의 수행에 관한 심의

2.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및 평가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

3. 제35조 및 그 밖에 사업의 평가·관리 및 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

4. HK+사업의 가이드라인 및 사업계획·평가·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접 학문분야 전공자 또는 대학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전문기관 직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,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전문기관의 HK+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협의하고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HK+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

제9조(참여 조건) HK^{+}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장은 사업 신청 전 교(학)칙에 명시된 설립 근거에 의하여 연구소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)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조에 의한 유형별 선정된 HK^{+}연구소에 대하여 HK^{+} 1유형에 선정된 연구소에는 HK교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, HK^{+} 2유형에 선정된 연구소에는 HK교수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최대 7년(3+4년)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예산상황, 사업추진상황, 연차별, 단계별 평가 및 수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참여인력 구성) ① 대학교의 장은 HK^{+}연구소의 참여 인력을 연구소장, 일반연구원, HK교수, HK연구교수, 연구보조원, 전담행정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HK^{+}사업 선정 후 10개월 이내에 HK교수와 HK연구교수를 합하여 4명 이상을 임용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 선정 시 전문기관에서 승인한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인원대로 HK교수와 HK연구교수를 임용하여야 한다.

④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임용하는 경우 HK교수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전체인원의 3분의 2를, HK연구교수는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 임용된 HK교수 및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연구소에 임용되어 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⑤ 대학의 장은 HK^{+}연구소의 참여 인력의 신청 및 변경 시, 신청요강에 명시된 연구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자를 참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소장) ① 대학교의 장은 HK^{+}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장(연구단의 경우 참여기관 대표도 해당)을 임명하고, 연구소장은 아젠다 설정, 연구소 기반 조성, 인력 육성, 연구소 운영 및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을 총괄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소장이 아닌 경우 사업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HK+사업비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(본인의 연구활동비 포함)을 사용할 수 있다.

④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단계별 지원기간(3년+4년)동안 소장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강악화,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연구소장은 HK+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주도 대형(연간 2억원 이상)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.

⑥ 연구소장의 교수시간은 매년 9학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일반연구원) ① 연구소장은 HK+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HK+사업 참여자로 학과소속 전임교원 중 전문기관에 등록한 자를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일반연구원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1. 휴직중인 교수

2.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(다만, HK+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)

3. 정부의 연구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및 연구자

② 일반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HK+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.

③ 1단계에서는 선정 당시 연구계획서 상의 일반연구원의 수를 감소할 수 없다. 다만, 2단계 이후 일반연구원의 수 감소는 각 단계 시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.

④ 연구소장이 일반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HK+사업 신청 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(3년+4년)을 원칙으로 하며, 만약 단계별 사업기간 내에 일반연구원이 HK+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, 단계별 논문 게재의 의무는 후임 연구자와 공동 책임으로 한다.

⑥ 일반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의 HK+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하며, 단계별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논문(또는 저역서)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.

제14조(HK교수) ① HK교수는 최초 임용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연구소 소속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사업 완료 이후에도 그 직위 및 권리가 유지되는 교수를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+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.

1. 사립대의 경우,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면서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자

2. 국공립대의 경우,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학칙에 의해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무기계약 기금교수 등으로 임용된 자

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하여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, 연구실 제공, 시설이용,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의 임면사항이 발생할 경우,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대학교의 장은 이직, 퇴직 등으로 인하여 HK교수 결원 발생 시, 발생시점 이후 다음 학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HK교수를 충원하여야 한다.

⑤ HK교수는 해당 연구소의 HK+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, 단계별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아젠다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서 연 평균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 저역서의 경우 단독 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,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. 다만 상기 HK교수 논문게재 편수와 관련된 의무는 임용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
⑥ HK교수는 학과나 타 기관업무를 겸직 · 겸무할 수 없으며 HK+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. 단, HK+2유형 연구소의 HK교수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겸직 · 겸무가 가능하다.

⑦ HK+2유형 연구소의 HK교수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HK연구교수)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를 HK+연구소 소속으로 임용하여 연구소에 상근하며, HK+사업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임연구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 보수는 연구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% 이내에서 추가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.

③ 대학교의 장(또는 연구소장)은 HK연구교수의 임면 사항이 발생할 경우,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HK연구교수는 해당 연구소의 HK+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, 단계별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아젠다 관련 논문을 주저자로서 연 평균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 저역서의 경우 단독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,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산정한다. 다만 상기 HK연구교수 논문게재 편수와 관련된 의무는 임용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
제16조(전담행정직원) ① 대학교의 장은 교비 등 대학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정직원을 HK+연구소에 1인 이상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. 다만, 전담행정직원은 정식직원이어야 하고 조교, 연구원 및 재학생은 행정직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교비 등 대학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지역인문학센터 전담행정직원을 HK+연구소에 1인 이상 배치하여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. 다만, 지역인문학센터 전담행정직원의 자격은 대학의 자율로 정한다.

③ HK+ 2유형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소속 전담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지역인문학센터 행정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참여 기관) ① 대학교의 장(또는 연구소장)은 연구소 운영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중·소규모 연구소를 참여기관으로서 HK+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참여 기관은 인문학분야 대학부설연구소와 함께 연구단을 구성하여야 하고, 연구소 간의 역할 및 의무분담내역(예산배분, 인력임용 및 정년보장 계획 포함)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, 선정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단일 대학부설연구소가 주관이 된다.

③ 주관 대학부설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가 인력 임용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.

④ 참여 기관은 인력,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.

⑤ 주관대학부설연구소와 참여기관이 동일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계획, 서로 다른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운영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(협력 기관) 대학교의 장은 HK+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: 「지방자치법」 상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 및 시, 군, 구
2. 연구소: 정부출연연구소, 기업체부설연구소, 지자체출연연구소
3. 비정부기구: 「민법」 상 비영리법인, 「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 상 공익법인
4. 언론기관: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과 「방송법」 및 「전파법」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법인
5. 시도교육청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상 시, 도교육청

6. 기타 기관: 박물관, 도서관, 문화원, 기타 연구단체 및 기관

제19조(연구소 운영) ① 대학교의 장은 HK+연구소 운영의 제도화와 조직 체계의 개선을 위해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HK+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대학 인사위원회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HK연구교수의 경우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③ 대학교의 장은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대학교의 장은 HK+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성과 및 연구소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⑤ 대학교의 장은 HK+연구소 특성에 맞는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 혹은 전국 규모의 학술지 발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⑥ 대학교의 장은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 협의 및 학술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성과가 학문적·사회적으로 확대·재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⑦ 대학교의 장은 DB구축, 자료서비스, 시민강좌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.

제20조(지역인문학센터) ① 대학교의 장(또는 연구소장)은 HK+연구소가 지자체, 인문도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인문자산활동과 시·도별 초·중등 인문소양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'지역인문학센터'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HK+연구소는 '지역인문학센터'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'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'의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장 대학교의 장,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교수,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

제21조(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) ① 대학교의 장은 HK+연구소 선정 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소속 대학교의 전임 교원 임용 규정 및 채용 절차에 따라 HK교수를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 신청 시 대학이 제출한 연도별 임용계획에 따라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전원을 임용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HK+2유형 연구소의 경우 HK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용하기로 협약한 HK교수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를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, 연구소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제22조(대우 규정 제정) 대학교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, 이를 소속 HK+연구소에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

제23조(연구 환경 보장) ①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 시설 및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게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 연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,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③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에게 1인당 최소 4.95㎡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,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4조(HK교수 정년보장) ①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해서 학과의 전임교원과 같은 발전 단계(조교수-

부교수-정교수)를 제도화하는 규정 또는 규정 개정 계획과 단계적 정년보장 계획(구체적 예산확보 계획 포함)을 신청 시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를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정년트랙으로 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년보장 확정 전에는 심사 등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대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HK교수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하여야 하며, 정년보장 심사는 학교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.

1. 1유형: 6년차 사업기간 완료 시까지 간접비 및 연구소 인센티브, 지역인문학센터운영비를 제외한 최대 연간 국고지원금 3억원당 1명 이상(1차년도 연구계획서 기준, 소수점 이하 올림수)

2. 2유형: HK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용하기로 협약한 HK교수 수

④ 대학교의 장은 신청 시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활용, 정년보장 계획 및 예산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사립대학교는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을 위반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 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전문기관이 사업기간 내에 대학의 HK교수 정년 보장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취소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⑦ 국공립 대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HK교수를 교육공무원(연구소 전임교원)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25조(사업 수행주체) ①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HK^{+}연구소가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

2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공간 및 행정지원
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
4. 본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및 협약사항 준수

5.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

②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HK^{+}연구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
2. 사업의 총괄 수행

3.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

4.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
5. 지역인문학센터 운영

6.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

③ 대학 및 HK^{+}연구소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이 가이드라인 및 사업공고 또는 협약 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.

④ 대학의 장 및 HK^{+}연구소의 장은 가이드라인 및 참여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간의 상시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,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

제26조(전문가 자문)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+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자문단은 각 학문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소장은 필요 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전문기관의 장은 자문 결과를 해당 HK+연구소의 연차점검, 단계평가 및 총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27조(자체평가)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HK+연구소에 대한 대학교 차원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.

② 자체평가는 HK+연구소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대학교의 장은 제29조, 제30조, 제31조에 의한 연차점검, 단계평가, 총괄평가 보고서 제출 시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수시점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+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의 사업 수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대학 및 연구소의 장은 전문기관의 수시점검을 위한 자료 및 현장조사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
제29조(연차점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연간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, 대학교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연차점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1. HK교수(정년트랙)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

2.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

3. 사업비 집행 실적

4. 지역인문학센터 운영결과

5.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

③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을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하위 연구소 지원예산을 10% 범위 내에서 삭감하여 상위 연구소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, 주의 또는 경고 조치, 협약해약, 사업비 회수 등을 할 수 있다.

제30조(단계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+연구소의 3년차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별 성과를 점검·평가하기 위하여 단계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, 대학교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1. HK교수(정년트랙)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

2. 사업추진상황 및 단계 내 성과달성 정도

3. 사업비 집행 실적

4. 지역인문학센터 운영결과

5.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

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대해서는 연구소 간 평가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HK교수 정년트랙 임용의무 위반 및 사업 성과가 계획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경우

2. 평가결과 만점의 70% 미만을 득점한 경우

3. 평가결과 하위 20%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

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소의 경우, 당해연도의 신규 신청 연구소와 경합하여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⑥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지원 중단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사업성과가 우수한 연구소 또는 신규 연구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.

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, 주의, 경고조치, 협약해약, 사업비 회수 등을 할 수 있다.

제31조(총괄평가)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^{+}연구소의 최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 연도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.

② 대학의 장은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, 전문기관은 이를 분석·평가하여 연구소별 총괄평가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단계의 단계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③ 총괄보고서에는 HK교수의 정년트랙 임용 결과 및 정년보장 완료 결과가 적시되어야 하며, 사업 기간 내 정년보장이 완료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향후 정년보장 완료 계획(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다)이 명시되어야 한다.

제32조(사후관리)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7년간의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3년 간 연구소 소속 HK교수 정년보장 직위 및 규모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대학 및 연구소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현장조사 시 관련 자료요청 및 점검,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및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의무 이행요구를 포함한 주의,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사업비 회수 등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후관리는 2021년도 신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.

제33조(주의 및 경고 조치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,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할 수 있으며,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은 HK^{+}연구소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주의 2번은 경고 1회로 간주하며, 사업기간 중 동일 사안으로 경고를 3회 받거나 누적 경고가 5회를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HK^{+}연구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경우, 대학교의 장은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장 기타

제34조(홈페이지 운영 등) ① 연구소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연구소 현황, 사업진행 상황, 사업(아젠다) 실적,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지역인문학센터 성과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해외지역 연구소장은 해당 지역의 기초 및 전문자료 D/B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5조(위반사항에 대한 제재) ① 제11조(참여인력 구성), 제12조(연구소장) 제2항, 제4항 및 제5항, 제13조(일반연구원) 내지 제16조(전담행정직원), 제19조(연구소 운영) 제1항 및 제2항, 제20조(지역인문학센터), 제21조(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), 제23조(연구 환경 보장), 제24조(HK교수 정년보장), 제25조(사업수행주체)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이 미진할 때 및 제28조(수시점검) 내지 제32조(사후관리)의 점검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문한국플러스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경고 조치, 협약해지,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HK교수 임용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별표] HK교수 임용의무 위반 제재조치 기준(제35조 제2항 관련)

1. 중간평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

○ 연구소가 협약 시 제출한 연도별 HK교수 임용계획을 위반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‘경고’ 및 ‘차년도 사업비 삭감’ 처분

- 1유형

구분	사업비 삭감 기준
인건비기준	■ 해당연구소 HK교수 평균인건비(약 70백만원 내외) × 미임용기간비율*

* 미임용 인원이 복수인 경우 인원별 미임용기간비율에 따른 사업비 삭감 금액 산출 후 합산

- 2유형

구분	사업비 삭감 기준
인건비기준	■ 해당연구소 간접비 총액 × 미임용기간비율*

* 미임용 인원이 복수인 경우 인원별 미임용기간비율에 따른 사업비 삭감 금액 산출 후 합산
* 2유형은 HK교수 결원 발생 후 기한 내 미충원 시 제재하며, 사업비 삭감 기준 별도 적용(제14조 제4항)

○ 중간평가를 통해 미임용사항 적발 시 차년도 중간평가 시까지 임용 필수 ⇒ 기한 내 미임용 시 ‘협약해지’ 및 ‘사업비 회수’

- 단, 단계평가(3년주기)로 미임용사항 적발 시 지원중단

2. 6년차 평가 및 사업 완료 연구소 대상 제재처분 기준

○ (처분기준) ①의무확보기준 미달, ②협약인원 미달로 구분

구분	제재처분기준	
	제재처분액 산식	참여제한
의무확보기준 미달	3억원 × 미충족인원 × 사업기간(7년)	참여제한 1년*
협약인원미달	[간접비 지급 총액 × (미충족인원/협약인원)] + [직접비 지급 총액 × (미충족인원/협약인원) × 결원기간/총기간]	

* 대상 대학은 처분일로부터 교육부소관 연구소단위 연구지원사업(이공분야 포함)에 1년간 신청제한
* HK+ 2유형 연구소는 협약인원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기준 적용

○ (HK교수 정년보장) 사업종료년도 총괄평가 시 HK교수 정년보장 직위여부 판단

- HK교수의 계약만료시점과 해당 연구소의 사업종료시점이 동일한 경우 총괄평가 시까지 재계약 완료 필수

- 기한까지 재계약 미완료시 HK교수 미임용으로 간주하여 제재처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회수 처분

3.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

○ ‘21년 신규선정되는 과제부터 사업비 지원 기간(7년)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 기간(3년) 내 협약사항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, ‘협약해지’ 및 ‘사업비 회수’